



제 42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 김우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79호)

2025. 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4
1.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65조의2 신설 등)	4
2. 수신료의 조정 신청 및 결정(안 제65조)	22
3. 수신료의 배분(안 제68조)	27
4. 수신료의 통합징수(안 제67조)	31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우영의원 등 17인

나. 발 의 일 : 2024. 11. 14.

다. 회 부 일 : 2024. 11. 15.

II.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시청자인 국민이 공영방송 KBS에 납부하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운영·유지를 위해 부과하는 ‘특별 부담금’이기 때문에 일반 조세와 동일시할 수 없고, 유료방송 시청료 납부와는 이중부담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아울러 수신료 부과 목적, 부과 대상, 부과 기준에 있어서 조세나 서비스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구분된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런데도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인상, 수신료 산정 및 배분, 수신료 고지 및 징수 방법 등에 관한 문제는 수신료 자체의 목적성,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판단 차원에서 논의되기보다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정치적 논란에만 매몰되어 수신료 논의의 본질이 왜곡당하는 수난을 겪고 있음.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모법인 방송법이 아닌 방송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의적으로 수신료 분리 고지를 하도록 강행하여 공영방송 KBS뿐만 아니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음.

이에 각 지역별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독립된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여기에서 수신료의 인상·인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객관적인 수신료 산정 및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게 하여 수신료 징수 및 사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원활한 수신료 징수를 통한 효율적 운용과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현행 방송법시행령 상 규정하는 수신료 고지·징수와 관련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도록 법에서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Ⅲ. 주요내용

가.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증액 또는 감액은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가 결정하여 국회 본회의 승인으로 확정하도록 함(안 제65조).

나.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공영방송 KBS의 재원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과 수신료의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이하 “수신료위원회”라 함)를 설치함(안 제65조의2).

다. 수신료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21명으로 구성하고, 수신료위원은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이하

“광역의회”라 함)의 동의를 받아 각 광역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국회의장이 위촉함. 다만, 각 광역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의 수는 광역의회별 유권자 수, 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5조의3 신설).

라. 수신료위원의 직무상의 독립과 신분보장, 수신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 사무조직 설치 등에 관해 규정(안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7까지 신설).

마.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도록 함(안 제67조제3항 신설).

바. 수신료의 배분에 대해 수신료 중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수신료위원회가 정하는 배분기준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배분하도록 함(안 제68조).

IV. 검토의견

1.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안 제65조의2 신설 등)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텔레비전수신료를 산정하고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의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이하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고(안 제65조의2), 수신료위원회를 21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며(안 제65조의3), 신설되는 수신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대한 규정 등(안 제65조의5 등)을 두려는 것임.
- 안 제65조의2는 공영방송 재원의 안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과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으로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 안 제65조의3은 수신료위원회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수신료위원은 공영방송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각 광역의회의 동의를 받아 광역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국회의장이 위촉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안 제65조의4는 수신료위원의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분을 보장해 주려는 것임.
- 안 제65조의5는 수신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

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1/4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안 제65조의7은 수신료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지
 원하기 위하여 사무조직을 두도록 하고, 사무조직의 구체적인 구
 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안 제66조의2는 수신료징수권의 소멸시효, 환급청구권의 소멸시
 효를 5년을 규정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5조의2(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의 설</u> <u>치) 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할 공영</u> <u>방송의 재원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u> <u>보하고,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과 수신</u> <u>료의 배분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u> <u>국회의장 소속으로 공영방송수신료위</u> <u>원회(이하 “수신료위원회”라 한다)를</u> <u>둔다.</u>
<u><신 설></u>	<u>제65조의3(수신료위원회의 구성 등) ①</u> <u>수신료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u> <u>1명을 포함하여 총 21명 이내의 비상</u> <u>임 위원(이하 “수신료위원”이라 한다)</u> <u>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u> <u>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 <u>② 수신료위원은 공영방송의 전문성,</u> <u>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u>

현 행	개 정 안
	<u>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이하 “광역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각 광역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국회의장이 위촉한다.</u> <u>1. 회계 또는 감사관련 기관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u> <u>2. 방송관련 투자 및 경영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u> <u>3.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u> <u>4. 방송업계 또는 방송관련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u> <u>5. 방송, 법률, 행정, 경영, 회계, 기술 관련 학과의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하였던 자</u> <u>6. 시청자단체 또는 방송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거나 하였던 자</u> <u>7. 기타 수신료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하였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u> <u>③ 제2항에 따라 각 광역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의 수는 광역의회별 유권자 수, 의원 수 등을 고려하여 「국회법」 제169조에 따른 국회의 규칙(이하 “국회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u> <u>④ 수신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수신료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수신료위원의 결원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추천자의 추천을 받아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신료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및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으로서 탈당한지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중인 사람

현행	개정안
<u><신설></u>	8.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과 같은 법 제9조의 전문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그 밖에 수신료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5조의4(수신료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수신료위원은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수신료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65조의3제7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제65조의5(수신료위원회의 업무 등) ① 수신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5조제1항에 따른 수신료 조정 신청에 대한 심의·의결 2. 수신료 산정 및 수신료 배분안에 대한 심의·의결
<u><신설></u>	

현행	개정안
<신설>	3. 수신료 배분기준에 대한 심의·의결 4. 수신료의 산정 및 배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및 과제 수행에 대한 결정 5. 수신료의 합리적 산정을 위한 수신료 조사기구의 구성 6. 그 밖에 수신료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수신료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구받은 해당 방송사업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신료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수신료위원회는 업무수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의장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국회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동의를 받아 제출한다. 제65조의6(수신료위원회의 운영 등) ① 수신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수신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현행	개정안
	다만, 수신료의 조정 결정과 산정 및 배분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 ④ 수신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수신료위원회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⑥ 수신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과 관련한 필요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⑦ 수신료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비용은 「국회법」 제23조에 따라 편성한다.
<신설>	제65조의7(사무조직) ① 수신료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사무조직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제66조의2(수신료 징수권 및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① 수상기소지자에 대한 공사의 수신료 징수권은 최초 수신료 납부 통지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수신료의 과오납(過誤納)으로 인하여 생긴 수신료 납부자의 공사에 대

현 행	개 정 안
	<u>한 환급청구권은 환급사유 발생일로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u> <u>③ 수신료 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u>

나. 검토 의견

□ 수신료는 법 제64조¹⁾에 따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판례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법적 성질을 “특별부담금”으로 보고 있음²⁾.

□ 텔레비전수신료와 관련된 주요 연혁을 살펴보면, 1963년에 시청료(월 100원)으로 징수되기 시작하여, 1981년 컬러TV에 대해 2,500원으로 조정한 금액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음.

○ 최초의 수신료는 1961년 서울텔레비전방송국(KBS-TV) 개국 이후 KBS-TV의 시청료로 1963년부터 월 100원을 징수하기 시

1)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2)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47184, 현재 1999.5.27., 98헌바70.

작한 것임.

- 1973년 한국방송공사가 창립되면서 공영방송이 되었고, 1981년에 컬러TV에 대한 시청료가 2,5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 때 책정된 금액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음.
- 2023년 6월에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신료 징수 방식을 전기료고지서와 분리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는데, 2024년 12월에 다시 법이 개정되어 통합징수하는 방식의 개정안³⁾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025년 1월 22일 정부 재의요구로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임.

<수신료 관련 주요 연혁 >

- 1961. 12. 31. 서울텔레비전방송국(KBS-TV) 개국
- 1963. 1. 1. 시청료징수 개시(월 100원)
- 1973. 3. 3. 한국방송공사 창립(국영방송→공영방송)
 - * 76.7, 우편고지서를 통하여 은행에 자진 납부
- 1981. 4. 1. 컬러TV 시청료 신규책정 (컬러 2,500원/흑백 800원)
 - * 80.12.01. 컬러TV 시험방송 실시, 84.12.01. 흑백TV시청료 폐지
- 1983. 9. 1. 행정기관 위탁징수제도(통합징수) 도입
- 1986. 7. 1. 가정용TV 시청료 부과기준 변경 (대수단위→세대단위)
- 1989. 1. 1. 시청료 명칭 변경 (시청료→텔레비전방송수신료)
- 1994. 10. 1. TV수신료 징수업무 한국전력 위탁
- 2000. 1. 12. 방송법 개정 (수신료 금액은 이사회가 결정, 공보처장관 승인 → 수신료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 방통위거쳐 국회에서 승인)
- 2023. 6. 14.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
- 2024. 12. 26. 수신료를 통합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국회 본회의 의결 → 2025. 1. 22. 정부 재의요구

3) 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1)

□ 수신료의 성격 등과 관련하여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례⁴⁾에서 수신료의 법적 성질은 특별부담금에 해당하고, 수신료 금액을 국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2000년에 수신료 금액을 국회에서 승인하도록 법률을 개정함.

○ 1989년에 시청료에 대한 명칭을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변경하였고, 199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수신료의 법적 성질을 “특별부담금”으로 보았음.

○ 또한, 해당 결정례에서 수신료를 금액은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판시⁵⁾하면서 2000년에 법률을 개정하여 수신료 금액은 KBS이사회가 심의한 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거쳐 국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현재의 수신료는 법 제65조⁶⁾에서 ①한국방송공사

4) 헌재 1999.5.27., 98헌바70, 대법원 2000.2.25., 98다47184.

따라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을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5) 헌재 1999.5.27., 98헌바70.

공사는 비록 행정기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설립목적, 조직, 업무 등에 비추어 독자적 행정주체의 하나에 해당하며,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으로서 국민에게 금전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공사가 수신료를 부과·징수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행정작용이 분명하고, 그 중 수신료의 금액은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 수신료의 징수절차와 함께 수신료 부과·징수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이다. 대부분의 가구에서 수상을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수신료의 결정행위는 그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수많은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관련된다. 따라서 **수신료의 금액은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6)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의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②방통위를 거쳐 ③국회의 승인을 얻어 그 금액이 확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3단계 수신료 결정 제도에 대해서는, KBS이사회가 심의·의결, 방통위를 거쳐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을 뿐 각 단계별로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절차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⁷⁾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는 수신료 인상을 결정하는 특별한 절차나 기준이 없고, 수신료 사용 기관인 KBS가 자체적으로 수신료를 산정하므로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방통위의 경우에도 특별한 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절차나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수신료 결정의 최종 과정인 국회 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심의나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없이 일반 의안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개정안은 이러한 수신료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역별 시청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독립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객관적으로 수신료를 산정하고 배분기준 등을 마련

7) 봉미선·신삼수, 2019.12.31., 「공영방송 TV수신료 결정 절차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고찰」, 입법과 정책(제11권 제3호), p.339.

하려는 취지임.

□ 별도의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신료를 결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수신료금액의 결정을 독립된 위원회에 부여하고 국회가 확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는 점, 수신료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려는 취지의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헌법재판소는 수신료금액은 국회가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수신료금액의 1차적인 결정권한을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독립된 위원회에 부여하고서 국회가 이를 확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하였음.⁸⁾

○ 또한, 개정안과 같이 수신료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려는 취지의 법안이 이전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오고 있어 논의의 필요성이 있음.

- 각 법안들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보면 우선, 명칭의 경우 천영세의원안, 이병석의원안, 허원제의원안은 “수신료산정위원회”로, 노웅래·전혜숙의원안·김우영의원안은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음.

8) 헌재 1999.5.27., 98헌바70.

국회가 수신료금액을 법률로써 직접 규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면 적어도 그 상한선만이라도 정하고서 공사에 위임할 수도 있고, 공사의 예산을 국회에서 승인토록 하는 절차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이며, 또 수신료금액의 1차적인 결정권한을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독립된 위원회에 부여하고서 국회가 이를 확정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 다음으로 수신료위원회의 성격 및 소속과 관련하여, 천영세의 원안은 방송위원회 산하로, 이병석의원안은 독립기구로, 허원제 의원안은 대통령 소속으로, 노웅래·전혜숙·김우영의원안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 참고로, 천영세의원안은 당시 2004년 기준 방송위원회 산하로 두었는데, 이를 현재 기준으로 보면 방통위 산하로 볼 수 있음.
- 수신료위원회의 위원수는 천영세의원안이 15명, 이병석의원안이 10~15명, 허원제의원안은 이보다 많은 17명, 노웅래·전혜숙·김우영의원안은 21명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천영세·이병석·허원제·노웅래·전혜숙의원안은 논의 후 의결되지는 못하였고 임기만료 폐기되었음.

<수신료위원회 관련 입법 발의안>

구분	천영세 의원안	이병석 의원안	허원제 의원안	노웅래 의원안	전혜숙 의원안	김우영 의원안
소속 정당	민주 노동당	새누리당	새누리당	통합 민주당	더불어 민주당	더불어 민주당
발의일자	2004.10.21.	2012.3.5.	2012.4.19.	2014.1.1.	2021.5.17.	2024.11.14.
명칭	수신료 산정위원회	수신료 산정위원회	수신료 산정위원회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위상	방송위 산하	독립적	대통령 소속	국회의장 소속		
위원수	15명	10~15명	17명	21명		
형태	비상임	비상임	비상임, 4년	비상임, 2년		
진행현황	폐기	폐기	폐기	폐기	폐기	발의

자료: 신삼수·김동준·봉미선, 2022.8.31., 「TV수신료위원회 절차에 관한 전문가 인식 연구」, 「입법과 정책(제14권 제2호)」, p.243.을 바탕으로 재구성.

□ 수신료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개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수신료위원회의 성격 및 소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음.

○ 첫째, 개정안과 같이 수신료위원회를 국회의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통제가 아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금액을 결정하는 방안으로 적합한 측면이 있다⁹⁾는 긍정적인 견해가 있음.

○ 반면, 공영방송 프로그램에 외부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¹⁰⁾도 있는데, 방통위도 공영방송 운영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 개입 우려가 제기된다는 입장임.

- 방통위는 수신료위원회를 국회의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국회 내에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수신료 조정안 승인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공영방송 운영에 대한 정치적 이해관계 개입 우려가 제기된다는 입장임.

- 나아가 방통위는 행정작용의 중요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로, 국회의장 소속 위원회로 하여금 행정작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허용되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¹¹⁾임.

9) 신삼수·김동준·봉미선, 2022.8.31., 「TV수신료위원회 절차에 관한 전문가 인식 연구」, 「입법과 정책(제14권 제2호)」, p.243.

10) 신삼수·김동준·봉미선(2022).

11) 참고로 방통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 전해숙의원안에 대해 법제처가 다음과 같은

○ 둘째, ②수신료위원회를 방통위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통위와 수신료위원회의 업무적인 유기성을 기대할 수 있다¹²⁾는 찬성 의견이 있고, 방통위도 이와 같은 방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음.

- 방통위는 방송사 허가, 방송평가 등 공영방송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보다는 방통위에 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다만, 이에 대하여 공영방송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수신료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정치적 영향력 개입이 우려된다¹³⁾는 반대 견해도 제시되고 있음.

○ 참고로, 앞서 표에서 본 바와 같이 2004년 발의되었던 천영세의 원안이 수신료위원회를 방송위원회(현재 기준 방통위) 산하에 두고 있었음.

□ 둘째, 수신료위원회의 구성·임기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음.

○ 개정안은 수신료위원회 위원의 인원, 임기, 구성방법, 결격사유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법률로 정하여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의견을 제시하였음.

행정작용에 관하여 중요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이므로, 국회의장 소속 위원회로 하여금 행정작용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법체계상 허용되는 것인지 검토 필요
--

12) 신삼수·김동준·봉미선(2022).

13) 신삼수·김동준·봉미선(2022).

높이고 있는 반면, 방통위는 수신료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등을 고려하여 세부 절차는 시행령 등에 위임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방통위는 수신료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 위촉, 구성, 인원 등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적인 절차는 시행령 또는 규칙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편, 수신료위원회의 위원 수에 대해서 개정안은 21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제22대 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위하여 발의, 재의요구된 후 부결된 방송관계법¹⁴⁾ 상의 공영방송 이사의 수 21명과 동일함.

- 참고로, 과거 천영세·이병석의원안은 15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¹⁵⁾에서 공기업 등의 이사회를 15인 이내로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
- 방통위는 지역방송발전협의회 9명,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7~9명,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9명 등 방통위 법정위원회 위원 구성이 평균 9명인 점을 고려하여 9명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1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0946)」,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0947)」, 「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200948)」

1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구성) ①이사회는 기관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인을 초과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마지막으로, 수신료위원회의 업무·운영 등은 수신료위원회의 성격 및 소속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통위의 견이 있음.

○ 방통위는 수신료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운영, 예산 등도 다른 방통위 소속 법정위원회와 같이 방통위의 심의·의결 절차, 사무처 조직, 예산 집행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참고로, 수신료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이해관계자 중 한국방송공사는 반대입장이고,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임.

○ 한국방송공사는 수신료위원회에 대해 KBS이사회의 기능과 중복 또는 충돌 가능성이 있어 이사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공영방송 감독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임.

<한국방송공사>

- 현행 방송법 제65조는 수신료 금액을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가 승인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일부에서 독일의 수신료 산정기구 사례를 들어 ‘수신료산정위원회’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음. 외부의 관여 확대를 통해 수신료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내에서 공영방송 제도를 둘러싼 사회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 현실성과 타당성을 판단해야 함
- 공영방송수신료산정위원회는 KBS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인 KBS이사회의 기능과 중복 또는 충돌 가능성이 있어 이사회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공영방송 감독 기능을 약화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 따라서 이에 관한 논의는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전제함과 동시에, 현재의 수신료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에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신료 등 재원의 투명한 운용과 관리·확보 및 별도의 독립된 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퇴직한 사람을 수신료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범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임.

<한국교육방송공사>

-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재원) 제2호’에 따라 수신료를 운영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수신료 등 재원의 투명한 운용과 관리 확보 및 별도의 독립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함
- 수신료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재직 중인 임·직원은 이해당사자에 해당하여 차단할 수 있으나, 퇴직한 사람까지 제외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범할 소지가 있음. 퇴직 후 일정 경과기간을 둘 수도 있을 것임
- 수신료의 납부는 단순한 비용 지불이 아니라 시청자가 스스로 방송에 참여하는 상징적 행위가 되며, 특히 우리나라 수신료는 전기요금에 병합하여 징수함으로써 시청자 납부 거부 의사 등을 반영하기 힘든 구조로 위원회는 보다 수신료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함

2. 수신료의 조정 신청 및 결정(안 제65조)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안 제65조의2에 따라 수신료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 KBS가 KBS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신료위원회에 수신료의 증액 또는 감액 조정을 신청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임(안 제65조).

현 행	개 정 안
第65條(受信料의 決定) 受信料의 금액은 理事會가 審議・議決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國會의 승인을 얻어 確定되고, 公社가 이를 賦課・徵收한다.	제65조(수신료의 조정 신청 및 결정)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65조의2에 의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에 현행 수신료의 증액 또는 감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65조의2에 의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신료의 증액 또는 감액을 결정하여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신료 조정 신청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국회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날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본회의에 해당 보고안을 상정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교섭

현 행	개 정 안
	<u>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및 의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u> <u>⑤ 수신료는 공사가 부과하고 징수한다.</u>

나. 검토 의견

□ 개정안에 따라 수신료위원회가 신설될 경우 수신료는 ①KBS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신료위원회에 신청, ②수신료위원회의 심의·의결, ③국회의장 보고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받아 조정이 이루어지게 됨.

□ 이는 현재 ①KBS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②방통위를 거쳐 ③국회의 승인을 얻어 이루어지는 과정과 비교할 때, 수신료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추가되고, 방통위를 거치는 과정이 제외되는 것임.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신료는 2000년 이전에는 KBS이사회가 결정하고 공보처장관이 승인하는 형태로, 2000년 이후부터는 법 제65조16)에 따라 ①KBS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②방통위를 거쳐 ③국회의 승인을 얻어 그 금액이 확정하고 있음.

16)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

□ 한편, 현재의 수신료 금액은 2,500원으로, 1981년에 컬러TV에 대한 시청료로 책정된 금액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2007년, 2011년, 2014년, 2022년에 수신료 승인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음.

○ 역대 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살펴보면, 2007년에는 디지털 전환 완수 등을 위하여 4,000원안이 제출되었고, 2011년에는 방통융합 및 미디어 시장개방 시대 공적 가치 확보 등을 위하여 3,500원안이 제출되었음.

○ 2014년에는 광고의존도 축소 등을 위하여 4,000원안이 제출되었고, 2022년에는 새로운 미디어환경에서 요구되는 공적채무 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3,800원안이 제출되었음.

< 역대 수신료 인상 승인안 비교 >

구분	2007년 승인안	2011년 승인안	2014년 승인안	2022년 승인안
제출 사유	국가적 과제인 디지털 전환의 완수 및 난시청 해소를 위한 자원 조달	2012년 디지털 전환 완수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자원 조달	공영방송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한 재정 건전성 확보	새로운 미디어·사회환경에서 요구되는 공적채무 사업 수행
	왜곡된 자원구조의 정상화를 통한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	수신료 중심의 안정적 자원구조로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과 공익적 책무 확대	광고의존도를 줄여 수신료 수입 중심의 공영적 자원구조 확립	수신료 자원 비중 확대를 통한 공적 서비스 기반 강화

구분	2007년 승인안	2011년 승인안	2014년 승인안	2022년 승인안
	디지털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재원기반 강화	방통융합 및 미 디어 시장개방 시대 공적 가치 와 시청자 권리 보호를 위한 재 원 마련	디지털·스마트 시대 공적책무의 충실한 수행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	
수신료 금액	4,000원	3,500원	4,000원	3,800원

□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KBS수신료 인상 등이 수신료 자체의 목적성, 필요성, 적정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판단 차원에서 논의되기보다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정치적 논란에만 매몰되어 수신료 논의의 본질이 왜곡당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다만, 방통위는 수신료위원회를 방통위에 설치하여 기존과 같이 방통위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 이에 따를 경우, 현행 절차에 수신료위원회가 추가되는 결과로 되어 수신료 조정 절차가 현행보다 복잡해지는데, 수신료 조정 절차가 복잡해짐에 따라 수신료 결정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음.

○ 방통위안에 따를 경우 현행 ①KBS이사회 심의·의결, ②방통위, ③국회의 승인 절차에서 ①이사회 심의·의결, ②수신료위원회의 결정, ③ 방통위, ④국회의 승인의 절차로 변경되는데, 이는 현행에서 수신료위원회를 추가로 거치게 되는 형태임.

□ 추가로, 개정안은 수신료의 증감액 신청은 KBS가(안 제65조제1항) 하고, 이에 대한 의견제시는 EBS가(안 제65조제3항) 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신료의 증감액 신청 및 의견제시 모두 KBS, EBS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통위와 EBS의 의견이 있음.

○ 방통위는 KBS 외에 EBS도 수신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EBS의 조정 신청에는 KBS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EBS 또한 수신료를 재원으로 사용하는 공영방송사업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EBS는 수신료의 조정 신청 및 결정에서 배제되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3. 수신료의 배분(안 제68조)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수신료위원회가 결정한 수신료 중 10% 이상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한 수신료 배분기준에 따라 정한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배분하려는 것임(안 제68조).

현 행	개 정 안
第68條(受信料의 사용) 公社는 第65條 및 第66條에 따라 徵收된 受信料를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韓國教育放送公社法에 의한 韓國教育放送公社의 財源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8조(受信料의 사용) 수신료위원회는-----수신료 중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수신료 위원회가 정하는 수신료 배분기준에 따라-----배분하여야 한다.

나. 검토 의견

-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법 제68조¹⁷⁾ 및 시행령 제49조¹⁸⁾에 따라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KBS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가 징수한 수신료는 법 제56조¹⁹⁾에 따른 한국방

17) 제68조(수신료의 사용) 공사는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18) 「방송법 시행령」 제49조(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의 지원) 공사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방송의 실시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5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여야 한다.

송공사의 재원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제2호²⁰⁾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EBS에 대한 배분 비율은 과거 수신료 인상안이 제출될 때 5% 혹은 7%로 상향 조정하는 안으로 제출된 바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EBS는 배분비율을 15%로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역대 수신료 인상안을 살펴보면,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에 수신료금액의 인상과 함께 EBS에 대한 배분비율도 5% 혹은 7%로 현재의 3%보다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역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인상 승인안 중 EBS 배분 비율>

국회 제안일	수신료 인상액	EBS 배분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
2007.9.21	4,000원 (60%인상)	3% → 7%	○ EBS는 수입의 70%이상이 상업적수익으로 총당 ○ 공익적인 고품질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활성화를 위해 수신료 등 공적재원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2011.2.22	3,500원 (40%인상)	3% → 5%	○ EBS 재원구조는 공적재원 28.8% 특히, 수신료 8.8%로 비정상적 ○ EBS의 수신료 배분비율은 비정상적인 재원구조의 정상화를 위해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음

19) 제56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로 충당하되, 목적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광고수입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9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2. 「방송법」 제68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국회 제안일	수신료 인상액	EBS 배분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서
2014.3.4	4,000원 (60%인상)	3% → 5%	○ EBS 지원 비율(3%)은 2000년 이후 동결, 공적 재원 비중이 30%도 못미침 ○ 재원구조 개선·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도록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2022.1.6	3,800원 (52%인상)	3% → 5%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국가교육지원기능이 수신 료 사용이 필요한 공영방송의 공적책무에 해당 하는지, 따라서 수신료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 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

주: EBS 배분 비율은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에 포함된 EBS지원금 확대 방안으로 제시된 내용임.

○ 한국교육방송공사는 EBS가 지상파다채널방송서비스(MMS)를 통해 EBS 2TV를 실시 중임에도 재원 부족으로 인하여 신규 제작프로그램이 과소한 실정이므로, 최소배분비율을 15%로 상향함으로써 고품격 교육·교양·문화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함으로써 EBS가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 다만, 방통위는 배분기준의 상향입법 자체에 대해 신중 검토 입장이고, KBS는 배분기준 상향은 현재 KBS의 재정안정화가 선행된 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임.

○ 방통위는 현재 법 시행령 제49조에 EBS의 수신료 배분기준을 100분의 3으로 정하여 EBS 재원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고, 수신료 배분기준은 공영방송 재원, 수신료 징수체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배분기준 상향입법·비율확대 등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한국방송공사는 EBS 지원금액 상향이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현재 KBS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안정화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고 나서야 가능하다는 입장임.

<한국방송공사>

- EBS에 수신료를 지원할 경우 그 지원금액을 어느 정도 상향하는 것에 대하여 공영성 및 공공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 바이나, 현재 KBS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안정화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고 나서야 가능하고, 그때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 사료됨
- 한편, KBS는 EBS의 송신을 전부 대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신료 징수 및 민원 대응에 대한 행정인력을 포함, 한전 위탁 및 기타 비용을 KBS가 온전히 부담하는 등 수신료 징수를 위한 물적·인적 노력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음. ‘수익자 부담 원칙’에 합당하게 소요되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은 EBS에게 부과시키는 것도 고려해 볼직함
- 그리고, 현재 방송법 시행령 제49조는 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의 지원에 관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에 대한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과는 별도로’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시행령이 있음에도 송신지원에 소요되는 금액을 그대로 두고 100분의 10으로 정한 것인지, 기존 시행령과의 관계 문제도 확실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4. 수신료의 통합징수(안 제67조)

가. 주요 내용

□ 개정안은 2023년 이전에 수신료를 전기료와 통합징수하고 있던 것을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분리징수 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다시 통합징수 하도록 하려는 것임.

○ 「방송법」 제67조제2항²¹⁾은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라 ‘공사가 지정한 자’는 한국전력임.

○ 당초 「(구)방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은 수신료를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3년 7월 12일에 해당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재의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제2항²²⁾은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第67條(수상기 登錄 및 徵收의 委託) ① · ② (생 략) <신 설>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

21)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2)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②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7.12.>

현행	개정안
③ (생략)	하여 이를 행한다. 다만 공사와 지정 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나. 검토 의견

-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취지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의원 대표발의, 2200851)」이 2024년 12월 26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2025년 1월 25일 대통령 재의요구로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이에 대해서는 본회의 재의결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음.

문의처
02)6788-5226